학교법인 웅지학원

2024학년도 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인	재적이사	7인

1. 일시 : 2024년 12월 18일 15:00~16:00(회의소집 통보일 : 2024년 12월 10일)

2. 장소 : 네이버밴드 화상회의

3. 임원출석현황

○ 참석 임원 (6인)

- 이사(5인) : 임종하, 김기홍, 김정철, 김영권, 이용이
- 감사(1인) : 하태우

○ 불참 임원 (3인)

- 이사(2인) : 김옥, 이인호
- 감사(1인) : 김양부

배석 : 웅지세무대학교 박윤희 부총장, 송병곤 법인사무국 과장

4. 안건

(1)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임교원 재임용계약서

(2) 2024년 11월 박윤희 총장 취임 및 부총장 임명

(3) 웅지세무대학 발전계획 및 2025년 이후 발전계획 및 특성화

(4) 전임교원 임금조정

① 2025. 1.부터 시간강사 1.5배(법정소정 근로시간) 임금지급
2025년 교원급여계약서(첨부자료)

② 기채허가 소송에서 승소시 차액 보상

(5) 학교법인 웅지학원 감사 연임 건

(6) 정관개정(안)

(7) 기타사항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차계약 건 등

<간서명>	김정철	김기홍	임종하

5. 회의 내용

이사장 임종하 :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사정수 7명 중 재적이사 5명과 감사 1명 참석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에 의거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말하며, 참석하신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다.(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 정관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함) 그리고 박윤희 부총장과 송병곤 과장이 배석함을 말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제1안건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24년 2학기 기준 법정전임교원 수가 6명(270명÷25명×50%)이지만, 현재 전임교원 수는 27명이므로 전임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 김기홍 : 2025년 8월 말로 종료되는 전임교원부터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김영권 :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했는데, 인증평가요소에 전임교원들의 논문 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조조정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임종하 :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5년 8월 말로 종료되는 전임교원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2022년 8월 재임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교원 4명과 2024년 1월 MBC PD 수첩에 제보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재임용하지 않는다.

둘째, 2022년 8월 재임용계약서상 임용기간동안 폐강이 있는 교수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교수들은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계약을 한다.

셋째, 2025년 8월 재임용계약시 1년의 기간을 제시하고 이 기간에 논문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학술지에 게재한 교수에 한하여 나머지 2년의 임용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간서명>	김정호	김기홍	임종하

전　　원 :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임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임종하 : 2024년 12월에 박윤희 부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될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의 자제분인 송0곤(현 사무처과장)과 송0록(현 교학처 과장)을 부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0곤은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송0록은 대외협력처장을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 : 모두 거수로 답하다.

이사장 임종하 : 다음 안건으로는 2025학년도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학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께 제출된 대학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어학당(입학정원: 400명) 개설
2. 2026년 외국인유학생 대상 글로벌경영학과(입학정원: 200명) 개설
3. 2026년 4년제 대학으로 전환(입학정원 : 400명)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동의함을 말하며, 모두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전임교원 임금조정 건입니다. 학교재정이 어려워 2025년 1월부터 전임교원의 임금을 시간강사의 1.5배(법소정 근로시간)로 지급하기로 하고 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받을 경우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는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모두 거수로 찬성하다.

<간서명>	김정곤	김기홍	임경희

이사장 임종하 : 김양부 감사가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연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모두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다음은 정관의 이사 임기와 총장임기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모두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기타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학진흥재단 구조개선 컨설팅 결과
   (1) 경영위기대학 지정
   (2) 구조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2026학년도 입학정원 30% 감축 및 구조조정 실시)
2.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차 계약
3. 교직원 승진 건 (송○○, 현○○, 송○○), 보직 임용 기획처 처장-서○○
4. 교원 근태

<간서명>	김정호	신기홍	인로하

이사장 임종하 : 2024. 7. 교육부 감사시 교원들의 근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교원복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출근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교학처에 비치된 출근기록부에 반드시 출근 및 퇴근 일시를 기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교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주 3일(24시간) 이상, 방학기간을 포함 근무해야 합니다. 구정과 추석은 각각 1주간, 하계 및 동계방학은 각각 2주간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규정된 근무시간이 미달할 경우 6개월 단위로 미달한 비율만큼 연봉을 삭감합니다. 만약, 근태가 심하게 불량한 교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재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석 박윤희 부총장 : 지시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사장 임종하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김○찬, 이○현은 총장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배석 박윤희 부총장 : 지시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사장 임종하 : 마지막으로 이사님들의 다른 의견을 묻다.

전　　원 : 없다고 말하며, 모두 거수로 찬성하다. 그리고 간서명자로 임종하 이사장, 김정철 이사, 김기홍 이사를 호선으로 추천하다.

<간서명>	김정철	김기홍	임종하

이사장 임종하 : 전원동의로 임종하 이사장, 김정철 이사, 김기홍 이사를 간서명자로 의결하고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4. 12. 18. 16시 00분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 임종하 (서명)

이 사 김기홍 (서명)

이 사 김정철 (서명)

이 사 김영권 (서명)

이 사 이용이 (서명)

감 사 하태우 (서명)

<간서명>	김정철	김기홍	임종하

회의자료

(1) 2025년 9월 1일 이후 전임교원 재임용계약서

(2) 2024년 11월 박윤희 총장 취임 및 부총장 임명

(3) 웅지세무대학 발전계획 및 2025년 이후 발전계획, 특성화 포함

(4) 전임교원 임금조정

① 2025. 1.부터 시간강사 1.5배(법정소정 근로시간) 임금지급
2025년 교원급여계약서(첨부자료)

② 기채허가 소송에서 승소시 차액 보상

(5) 학교법인 웅지학원 감사 연임 건

(6) 정관개정(안) 이사임기, 총장임기(사립학교법 적용함) 등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7) 기타사항

① 사학진흥재단 구조개선 컨설팅 결과 -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2026학년도 입학정원 30% 감축 및 구조조정 실시)

②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차계약 건

③ 교직원 승진 건 (송○○, 현○○, 송○○), 보직 임용 기획처 처장(서○○)

④ 교원 근태 건

학교법인 웅지학원

專任敎員 任用(再任用) 契約書

학교법인 웅지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웅지세무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지침에 의하여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과 _____은(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분] 이 계약의 교원은 전임교원 신분을 취득하여 권리와 의무, 복무, 징계 등에 대하여 학교법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2 조 [계약기간] ① 임용계약기간은 **2025년 09 월 01일부터 2028년 08 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도래한 경우 동 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용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별도 '연봉계약서' 등의 적용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동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급여] ① 乙의 급여는 개별 연봉(급여)계약서에 따른다.
② 乙의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 4 조 [근무조건] ① 교수시간은 웅지세무대학교 학사규정이 정하는 주당시간을 이행하여야 하며, 강의일정은 1주 3일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교수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초과교수시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연구실은 1인1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공동사용을 할 수 있다.
④ 연구지원 인력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다.
⑤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⑥ 소속 학과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학사업무는 학칙 및 학사규정과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⑧ 강의현황은 녹화/녹음 등을 함에 동의하며, 녹화/녹음자료는 재학생의 복습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조 [업적 및 성과] ① 교원의 업적과 성과에 관한 사항은 웅지세무대학교 업적평가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교원은 교학처 및 소속 학과 계획에 따라 학생지도 및 진로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술연구, 교수학습법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다.

④ 산·학·연 협동연구, 특정연구 등으로 대회의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에는 웅지세무대학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교원은 웅지세무대학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소정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계약을 하거나 임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6 조 [재계약의 조건] ① 임용기간에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 A&HCI) 및 국내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에 2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한다.
② 상기 ① 항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의 경우에 한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임용심사를 한다.
③ 상기 ①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이라 하더라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임용심사를 할 수 있다.
④ 2026년 6월 30일까지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 A&HCI) 및 국내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에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경우 2026년 8월 31일로 재임용계약을 종료한다.

제 7 조 [재계약 절차] 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교원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재계약 조건 심사 후 재계약 결정 및 통보를 한다.
③ 대학은 재계약 탈락 대상이 된 교원에게 이의제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대학은 재계약 탈락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재심사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임용권자와 피임용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상기와 같이 임용계약(재임용계약)을 체결함.
2025년 09월 일

임용권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
임종하 (인)

피임용자 : 성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2025년 이후 대학발전계획

1. 한국어학당 및 글로벌경영학과 개설

(1) 2025년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학당 개설

① 교육기간 : 1년

② 입학정원 : 400명

③ 모집방법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모집

④ 등록금(1년) : 2025년 440만원, 2026년 이후 520만원

⑤ 기숙사비(1년) : 180만원(4인 1실 기준, 월 15만원)

(2) 2026년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경영학과(정원외전형)

① 교육기간 : 2년

② 교육내용 : AICPA 시험과목

③ 입학정원 : 200명

④ 모집방법 : 매년 3월 모집

⑤ 등록금(1년) : 520만원

⑥ 기숙사비(1년) : 180만원(4인 1실 기준, 월 15만원)

(3) 연간 예상손익 (단위: 백만원, 충원율 80%가정)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이후
한국어학당	211	666	832	832	832
글로벌 경영학과	-	832	1,664	1,664	1,164
기숙사	324	720	1,152	1,152	1,152
계	535	2,218	3,648	3,648	3,648

※1. 연도별 예상 학생수

연 도	한국어학당	글로벌경영학과
2025년	160명(200명×80%)	—
2026년	320명(400명×80%)	160명(200명×80%)
2027년 이후	320명(400명×80%)	320명(400명×80%)

2. 한국어학당 등록금수입은 위탁관리업체인 ㈜V&K와 계약한 배분비율에 의한 것임

2. 4년제 대학으로 전환

(1) 전환계획

① 2025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전환(설립)인가 획득

② 2026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신입생 모집(입학정원 400명)

③ 2030년부터 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입학정원 100명)

(2) 연간 예상손익(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등록금수입	3,033	6,002	8,908	11,749
기타수입	416	578	568	601
운영수입총계(A)	3,449	6,580	9,476	12,350
보 수	2,460	2,686	3,627	4,272
관리운영비	292	1,155	1,627	2,024
기타비용	697	2,739	4,222	6,054
운영비용총계(B)	3,449	6,580	9,476	12,350
운영수익과의 차액(A-B)	0	0	0	0

※1. 입학정원 400명에 충원율 84% ~ 81%를 적용함

2. 등록금 수입

(1) 2026년 : 400명×충원율 (84%)×900만원 = 3,033백만원

(2) 2027년 : 800명×충원율 (83%)×900만원 = 6,022백만원

(3) 2028년 : 1,200명×충원율 (82%)×900만원 = 8,908백만원

(4) 2029년 : 1,600명×충원율 (81%)×900만원 = 11,479백만원

3. 보수 및 관리운영비는 상기 예상 학생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교원 급여계약서

_____(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교수는 학교법인 웅지학원의 웅지세무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1. 급여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전학년도 근무실적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정한 1년 단위 급여총액은 [₩ 원]으로 한다. 급여총액은 정관, 대학구조조정규정, 교원복무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법인과 대학에서 정한 제규정(이하 제규정)에 의한 급여조정 시 기준금액이 된다.
3. 급여총액은 연봉(기본급여, 식대, 자격 및 연구지원비)과 기타 수당(학생지도수당, 보직수당, 고시반지도수당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매월 기본급여와 각 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제2항의 급여총액과의 차액은 신입생 200명(재학생 600명) 이상 또는 기채허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보상한다.
   1) 기본 급여 : 월 강의시간 × 1.5(법정소정 근로시간) × ₩50,000
   2) 식대 : 200,000원
   3) 자격 및 연구 지원수당 :
   4) 학생지도수당 :
   5) 보직수당 :
   6) 고시반지도수당 :
5. 위의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의 정관과 제 규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6. 월급여액은 급여총액 또는 조정급여총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025 년 1 월 1 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 代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박 윤 희 (날인)

직위 : 성명 : (날인)

▣ 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6.11.09.>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1. 이사 4년, 중임가능 <개정 2024.12.18.> 2.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규정 적용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4.12.18.>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오기 정정
제39조(임용)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총장의 임기는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20., 2023.09.22.>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3.16., 2006.11.09., 2012.07.25., 2018.10.30., 2023.02.08., 2023.09.22.>	제39조(임용)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총장의 임기는 최대 4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2023.09.22. 2024.12.18>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연구지도교수 포함)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3.16., 2006.11.09., 2012.07.25., 2018.10.30., 2023.02.08., 2023.09.22., 2024.12.18>	「사립학교법」 규정 적용 제73조 ③항 규정과 이해 충돌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제39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5.11.18., 2023.02.08., 2023.09.22.> 1. 근무기간 (단,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9.22.> 가. 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0.03.15.>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7.25.>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단, 연구지도교수는 비정년트랙 임용계약서를 적용함 <개정 2012.07.25., 2024.12.18. >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09.22.>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총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2023.02.08.>	제73조(총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1인은 관련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부총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3.02.08., 2024.12.18.>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임용 부참사를 5급으로 자구수정
제7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10.02.08., 2012.07.25., 2015.01.05., 2016.05.18.>	제7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으로 보한다. 단 대외협력처장은 관련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12.04.20, 2012.07.25, 2015.01.05., 2016.05.18., 2024.12.18.>	〃

(별표1) 법인일반직정원 (별표2) 학교일반직정원	(별표1), (별표2) 삭제	사문화된 규정

부 칙 <28판-개정/시행 2024. 12 18., 2025. 01. 06>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